

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

아래의 신청자는 필요한 자금에 대해 대출심사가 가능한 자임을 확인합니다.

- 아 래 -

- ◆ 신청자(업체명) : [redacted] 태양광발전소 (대표자 : [redacted])
- ◆ 투자지 주소 : 충청북도 충주시 [redacted]
- ◆ 대상 시설명 : [redacted] 태양광발전소 / 99.375kW
- ◆ 융자신청 예정금액 : 170백만원
- ◆ 담보물건 확보 예정액

(단위: 백만원)

| 동 산 | 부동산 | 신용보증기금 | 기타 담보 |
|-----|-----|--------|-------|
| | ○ | | |

* 동 사전확인서가 대출승인 확정은 아니며, 대출심사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2025 년 월 일

은혜 지점
(TE [redacted])

금융업 새마을금고

[redacted] (인)

귀하



충 주 시



수신 [redacted] 외 4인 귀하 ([redacted]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[redacted]
 (경유) [redacted]
 제목 개발행위허가 알림 [redacted] 외 4인, [redacted] 태양광]

1.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충주시 민원- [redacted] 호(2024.08.22.)로 접수된 충주시 [redacted] 상의 발전시설(태양광) 부지조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,
3. 개발행위 허가의 효력은 면허세 및 이행보증금 등을 납부한 후부터 발생되오니, 반드시 납부·제출한 후 착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허가민원과(개발행위팀) - 개발행위 허가내역(허가번호 [redacted])

| 소재지 | | 지목 | 지적 (㎡) | 사업면적(㎡) | | 사업기간 | 사업목적 | 신청인 |
|-----|-----|----|--------|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|
| 읍면동 | 지번 | | | 부지 | 도로 | | | |
| 계 | 5필지 | | 9,812 | 9,812 | | 2025.03. 허가일 ~ 2025.12.30. | 발전시설(태양광) 부지조성 | [redacted] [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[redacted]] |
| | | | | 9,433 | 379 | | | |
| | | 답 | 2,294 | 2,215 | 79 | | | |
| | | 답 | 1,379 | 1,354 | 25 | | | |
| | | 전 | 1,167 | 1,087 | 80 | | | |
| | | 전 | 2,129 | 2,064 | 65 | | | |
| | | 답 | 2,843 | 2,713 | 130 | | | |

□ 허가조건

-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면허세 금27,000원을 납부하여야 함.
- 지역개발공채 금14,710,000원 매입하여야 함
- 위해방지·환경오염방지·조경 및 원상회복 이행을 위한 이행보증금 금38,000,000원을 세입세출외현금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예치하여야 함.
 (이행보증금을 보험증권으로 예치하는 경우 허가만료일로부터 2개월 가산한 기간으로 예치)
- 사업 착공 전 부지 내 배수시설이 기존 배수로 기능에 영향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 후 시공하여야 함.
-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건축물 등 인공구조물은 친환경소재를 사용하여야 함.
- 부지공사 시 주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조치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

PPA고객 신청(변경) 접수증명서

| | | | | | |
|------------|------|----|---|------|------------|
| 접수번호 | | | 발전계약번호 | | |
| 발 전 사업자 | 고객명 | | | 발전소명 | 태양광발전소 |
| | 대인번호 | | | 전화번호 | |
| | 주소 | 지번 | 충청북도 충주시 | | |
| 도로명 | | | | | 2025-03-25 |

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|---------------|--|
| 수전계약번호 | | | 접수내용 | 신설(발전기) | |
| 발전원 | 01 태양광 | | 계약전력 | 100 | |
| 공급방식 | 738 삼상4선(220/380V) | | 공급전압 | 380V | |
| 설치장소 |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*** | | | | |
| 설비용량 | 99.54 | | 설비유형 | 3 일반선로(한전) | |
| 고객구분 | 03 발전사업자 | | 적용약관(규정) | 개별전력수급계약(PPA) | |
| 전력거래형태 | 한전거래 | | | | |
| 사 용 전 점검기관 | 3 안전공사(자가용/전기사업용) | | 전기공사업체 | | |
| 시설부담금 | 1 표준시설부담금 | | | 공중(O), 지중() | |
| 설비관리자명 | | | 연락전화 | | |
| SMS 수신번호 | | | | | |

※ PPA 신청시 발전사업자 확인 내용

- PPA 신청서내용 및 관련규정을 준수할 것을 동의하오며, 위와 같이 PPA 신청을 합니다.
- 접수가 취소되는 경우
 - 한전의 접속방안 안내 후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접속점 협의에 불응하거나 추가자료를 미제출한 경우
 - 접속공사비 청구서 발행일로부터 30일까지 미입금하여 입금최고를 받았으나, 최고후 7일까지 미입금한 경우
 - 개발행위허가 대상임에도 비대상으로 허위 접수한 경우
- ※ 접수시 제출한 비대상 여부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전 접수는 효력을 잃고, 전력구입계약 신청을 재접수한다.
 - 신청자가 접속공사비 입금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접속공사 착공에 불응하거나 지연할 경우
 - 준공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신청자의 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
 - 발전사업허가 용량과 실제시설용량의 차이가 10% 를 초과하였으나, 신청자가 사업허가용량이나 실제시설용량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(사업용 전력구입계약에 한함)
 - 발전사업허가의 사업준비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(사업용 전력구입계약에 한함)
- PPA 신청접수 후 상기의 사유로 신청이 취소된 경우는 취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접수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03월 18일

충북본부 충주시사장

(인)



위와 같이 PPA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증명합니다.

충북 충주 제2024-호

발전사업 허가증

1. 성명(대표자) : (생년월일:)

2. 상 호 : 태양광발전소

3. 소재지 : 경기도 하남시

4. 사업의 내용 : 태양광발전

사업장소 : 충북 충주시 동량면

5. 사업규모

원동력의 종류 : 태양광

설비용량 : 99.375kW

공급전압 : 380V

주 파 수 : 60Hz

6. 특정공급구역 : 해당없음

7. 사업준비기간 : 2024년 8월 9일 ~ 2027년 8월 8일

8. 허가조건 : 별도 불임

9. 기타 : 계획관리지역, 성장관리계획구역, 가축사육제한구역,
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

『전기사업법』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
발전사업을 허가합니다

2024년 8월 9일

충 주 시

